

# 행정명령서

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
가. 처분대상 시설·업종 : 불임

나. 처분기간 : 2020. 12. 29. 0시 ~ 2021. 1. 3. 24시

다. 처분내용 : 불임

라. 처분이유

-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 등 환자발생 추세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기간을 맞춰 6일간 연장한다는 방침

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각 호

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

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제2항, 제4항

아. 손해배상 :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 법의 행정처분의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

2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## <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>

대상자		1회 위반	2회 위반	상한액
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		50만 원	100만 원	100만 원
방역지침 위반	시설·장소의 운영자·관리자	150만 원	300만 원	300만 원
	시설·장소의 이용자 버스·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	10만 원	10만 원	10만 원

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4. 처분 총괄담당자

이름	소속	직급	연락처
임재욱	전북도청 사회재난과	지방서기관	063-280-3797
김종수	전북도청 사회재난과	지방시설주무관	063-280-3823

2020. 12. 28.

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



## 참고1

# 비수도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

※ **청색 볼드체(밑줄)**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

구분	비수도권 특별대책 방역조치
<b>①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</b>	
식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5인부터 예약,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, 결혼식,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(다만, 직장 회식은 금지)</li> </ul> </li> <li>▶ 21시~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</li> <li>▶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, ②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, ③ 테이블 간 칸막이/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(시설 면적 50㎡ 이상)</li> <li>▶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·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,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</li> <li>▶ 브런치카페·베이커리카페*,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·음료·디저트 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·배달만 허용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(파스타, 오믈렛 등)을 판매하는 곳</li> </ul> </li> </ul>
실외 겨울스포츠시설 (스키장, 빙상장, 눈썰매장)	▶ <b>집합금지</b>
백화점·대형마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</b></li> <li>▶ <b>시식·시음·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</b></li> <li>▶ <b>집객행사 금지</b></li> <li>▶ <b>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·의자) 이용 금지</b></li> <li>▶ <b>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</b></li> </ul>
<b>② 기타 다중이용시설</b>	
숙박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객실 수의 50% 이내로 예약 제한</b></li> <li>▶ <b>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</b></li> <li>▶ <b>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숙박시설 주관 파티·행사 개최 금지,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</li> <li>▶ 객실 정원관리 철저,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</li> </ul> </li> </ul>
파티룸	▶ <b>집합금지</b>
국공립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국공립공원 최대한 폐쇄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경륜·경마·경정·카지노, 체육시설 운영 중단</li> <li>▶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% 이내로 인원 제한</li> </ul> </li> </ul>
해맞이·해넘이 주요 관광명소	▶ <b>최대한 폐쇄</b>

구분	비수도권 특별대책 방역조치
<b>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</b>	
모임·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u>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권고</u></li> <li>▶ 100인 이상 모임·행사 금지</li> <li>▶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</li> </ul>
종교활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u>비대면 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원칙</u></li> <li>* <u>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·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(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·송출인력, 참여 신도 등)</u></li> <li>▶ 종교시설 주관 모임·식사 금지</li> </ul>

구분	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
<b>① 다중이용시설 : 중점·일반관리시설 등</b>	
공통수칙	▶ 마스크 착용, 출입자 명단 관리, 환기·소독 (상점·마트·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)
유흥시설 5종	▶ 집합금지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	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노래·음식 제공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노래연습장	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, 30분 후 사용
카페(무인카페 포함)	▶ 영업시간 전체 포장·배달만 허용
홀덤펍	▶ 집합금지
실내체육시설	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시설 면적 4㎡당 1명 인원 제한
학원·교습소 (독서실 제외)	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하고 21시 이후 (익일 05시까지)운영 중단
결혼식장	▶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장례식장	▶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
목욕장업	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영화관	▶ 21시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좌석 한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공연장	▶ 좌석 두 칸 띄우기 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PC방	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

구분	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
오락실·멀티방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시설 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</li> </ul>
독서실·스터디카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·무알콜 음료는 허용)</li> <li>▶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</li> <li>▶ 단체룸은 50%로 인원 제한</li> </ul>
놀이공원·워터파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수용가능인원의 1/3으로 인원 제한</li> </ul>
아·미용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</li> </ul>
백화점·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(300㎡ 이상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마스크 착용</li> <li>▶ 주기적 환기·소독</li> </ul>
<b>② 기타 다중이용시설</b>	
사회복지이용시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이용인원 50% 이하로 제한(최대 100명)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,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</li> </ul>
<b>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</b>	
마스크 착용 의무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, 위반 시 과태료 부과</li> </ul>
교통시설 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마스크 착용,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</li> </ul>
스포츠 관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무관중 경기</li> </ul>
등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밀집도 1/3 준수 (고교 2/3)</li> </ul>
직장근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공공기관은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,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·회식 자제</li> <li>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</li> <li>▶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/3 이상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</li> </ul>